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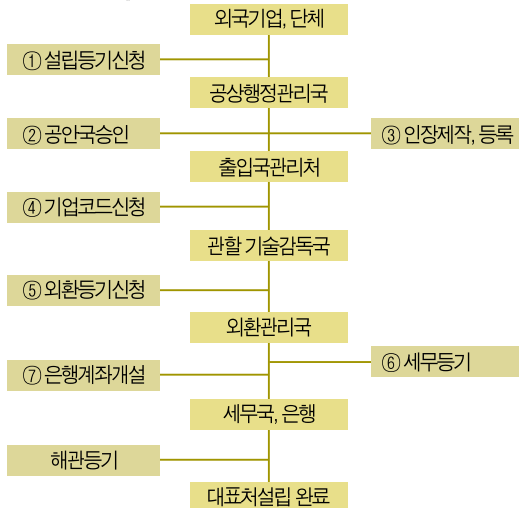
제1절 대표처 설립

I. 개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락사무소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대표처(代表處) 또는 관사처(辦事處)로 불리며 중국 법규상으로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이다. 중국이 죽의 장막을 걷어 올리던 80년대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의 발표를 시작으로 관련 법규가 잇달아 제정되면서 사무소의 체계적인 법적 개념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사무소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70년대 중반부터 외국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치했을 뿐이다.

II. 설립절차

《대표처설립절차도》



① 대표처설립 등기(5일 소요)

주무기관: 공상행정관리국

대표처설립 신청서 기재사항

- 대표처 설립의 분명한 의사
- 대표처의 활동범위
- 회사 개요
- 대표처의 설치기간
- 회사 명칭
- 대표처의 주소
- 대표처 수석대표 및 대표 성명

대표처설립을 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및 단체는 공상행정관리국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대표처에 파견되는 수석대표 및 대표는 공작증 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고 등기증 발급 시 공작증도 함께 발급받게 된다.

기간만료 이전에 대표처 활동을 마치고자 할 때는 종료 30일 이전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인원 및 내용(변경) 신고표’ 를 작성하여 종료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있을 때나 연장신청 시에도 같은 절차를 거친다.

연장신청 구비서류

- 등기증 원본
- 조직기구코드증 정, 부분 및 IC카드
- 통계등기증 정, 부분
- 세관등기증
- 각 대표 공작증, 취업증원본

② 인장제작에 대한 공안국 승인(즉시 처리)

주무기관: 공안국출입국관리처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서 인장제작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인장제작업체에서 이를 대행하는 경우 먼저 인장제작을 한 후 인장등록 시 승인 수속을 사후에 일괄처리 하기도 한다.

③ 인장 제작, 등록(1~2일 소요)

주무기관: 공안국출입국관리처 지정업체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의 인장제작에 따른 승인을 거쳐 공안국에서 지정하는 인장제작업체에 인장제작을 의뢰한다. 인장이 제작되면 다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인장제작업체가 대행하기도 한다.

④ 조직기구코드(代碼)증(3일 소요)

주무기관: 기술감독국

⑤ 외환등기(5~10일 소요)

주무기관: 외환관리국

⑥ 세무등기(3일 소요)

주무기관: 지방세무국

종전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개별적으로 등기하였으나 요즘에는 이를 지방세무국에서 일괄 처리한다.

⑦ 은행계좌개설(외환, 인민폐)

Ⅲ. 구비서류

① 대표처 설립 등기

설립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대표임명파견서 1부
- 은행발급 자산신용증명서 2부
-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 설립등기 신청서 1부
- 위임장 2부
- 기업비서(연락인)등기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수석대표 및 각 대표의 사진, 이력서, 여권사본
- 주소증명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건물소유권증 1부 혹은 임대인의 영업집조

② 인장제작에 대한 공안국 승인

구비서류

- 등기증 원본
- 수석대표 여권 사본
- 사무직원신분증 혹은 여권 사본

③ 인장 제작, 등록

구비서류

- 인장 제작 신청서(수석대표 서명)
- 인장 종류(공인, 재무인, 인명도장)
- 등기증 원본
- 수석대표 여권 사본
- 사무직원신분증 혹은 여권 사본

④ 조직기구코드

구비서류

- 등기증(원본, 사본)
- 수석대표 여권사본
- 관련 서류 작성, 날인

⑤ 외환 등기

구비서류

- 신청서
- 조직기구코드증, IC카드
- 수석대표의 여권 사본
- 외환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의 명칭
- 등기증
- 대표처 공인
- 한국본사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국세, 지방세 등기

구비서류

- 등기증
- 수석대표공작증
- 공인, 재무인, 인명도장
- 임대차계약 영수증
- 조직기구코드증
- 은행계좌개설허가증
- 임대차계약서

⑦ 은행계좌개설

구비서류

- 등기증
- 외환관리국 비준문서
- 공인, 재무인, 인명도장
- 한국본사사업자등록증
- 《외환등기증》
- 조직기구코드증, IC카드
- 수석대표 여권사본
- 회계직원 회계증 사본

IV. 설립비용

항 목	비 용
사무실임대료 및 보증금	실제지불금액
인화세	임대료의 천분의 1(임대인 절반부담)
설립등기비	인민페 601위엔
세무등기수수료	인민페 10위엔
조직기구코드 등록수수료	인민페 30위엔

V. 설립형태의 장단점

중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재에 의한 경제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며 시장조사, 중국 무역파트너와의 연락 업무, 회사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 통제,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현지법인 및 지사, 대표처 비교

구분	법인	지사	대표처
법률적 지위	중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체 여부	투자자와 현지법인 별도의 인격체 (민사 주체)	본사와 지사는 동일 인격체	본사와 지사는 동일 인격체
법률적 책임	투자자 책임안짐	본사 책임부담	본사 책임부담
설립허가	허가취득	허가취득	허가절차 없음 (일부 업종제외)
영업가능 여부	영업가능	영업가능	영업불가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발행가능	발행불가
과세표준	매출, 소득에 따른 과세	매출, 소득에 따른 과세	경비에 따른 과세
직원관리	직접채용관리	지정업체관리	지정업체관리

VI. 설립 시 유의사항

허가절차 취소

대표처 설립 절차는 종전에 설립 비준과 사무소 등기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특별히 규제하는 업종이나 특수단체를 제외하고 일반 기업 대부분은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함으로써 설립이 된다. 또한 기준에 중국 정부가 지정한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비준을 받을 수 있었으나 비준절차가 취소된 후로는 지정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일반 대행업체를 통하거나 외국회사가 직접 사무소 설립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관할지역 기관에 직접문의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 관할기관에 직접 문의를 한 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도

대표처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그 기업의 소재국에 합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사무실 선정

대표처 설립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반드시 해당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건물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사무소 설립 등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토지사용증 취득이 용이하고 그 대금이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고, 준공 후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건물들이 많으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쓸데없이 시간과 금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VII. 대표처 관련 증서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



조직기구코드증



외국기업세무등기증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1. 외국인투자기업 형태 구분 및 특징

1. 외자기업

(1) 외자기업(Enterprises with Foreign capital)이란

중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 영토 내에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의 전부를 외국 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외자기업은 흔히 외국인투자기업이라 칭하기도 한다. 1인 또는 수인의 외국투자자가 자본 전액을 출자하며, 법인격을 구비한 외자기업은 중국 법인이므로 중국법률의 규율 대상이 된다.

대다수의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투자이기 때문에 독자적 경영관리조직을 갖추며 수익과 투자손실을 투자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며 기본적으로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띤다. 그러나 외자기업이라도 외국인 2인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외국법인이 투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출자당사자 어느 누구도 지역적인 이점이 없기 때문에 중국측과 합자나 합작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책 결정이나 경영관리에 있어 의견대립이나 충돌이 적을 것이다.

(2) 특징

- 외국투자자가 자본 전액 출자
- 중국법률에 의거 중국영토 내에 설립된 기업
- 법률적 지위가 중국법인이므로 중국법률의 규율 대상
- 외자기업은 독자적인 경영관리조직을 갖출 수 있고 수익과 투자손실 투자자 단독으로 부담
- 기본적으로 유한책임회사 형태

2. 합자기업

(1) 합자기업이란

- 중외합자경영기업(Equity Joint venture)이란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단체 또는 개인이 중국법률에 의거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아 중국 내의 중국 회사, 기업, 기타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기업을 경영하며 공동으로 손익을 부담하는 기업법인 조직을 말한다. 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동사회가 있고 동사회에 파견할 이사는 출자비율에 따라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 투자자간의 투자되는 자본에 중점을 두는 기업 형태이다.

(2) 특징

- 중국과 외국투자자 공동투자 설립

- 중국법률에 의거 중국영토 내에 설립

- 중외투자자간의 인적관계 중시

- 공동경영, 공동수익, 공동위험부담의 유한책임회사

- 출자자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권리 향유, 의무 부담

- 기업 내 최고의결기관은 동사회

- 동사회에 파견할 이사는 출자비율에 따라 협의에 의해 확정

3. 합작기업

(1) 중외합작경영기업(Cooperative Joint venture / Contractual Joint venture)이란

-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외국의 기업이나 기타 경제단체 또는 개인이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단체와 중국 법률에 의거 중국 내에서 공동으로 설립하여 쌍방의 계약 약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관계가 결정되는 기업형식을 말한다.

- 중외합작경영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는 출자자들은 합작계약에서 출자 또는 합작조건, 수익 또는 제품의 분배, 위험과 손실의 분담, 경영관리의 방식과 합작기업 종료시의 재산의 귀속관계 등 기업의 제반 중요사항을 약정하여야 하고 합작자간의 위 약정에 따라 기업의 중요사항이 결정되는 기업형태이다.

(2) 특징

- 합작 당사자의 권리의무, 투자와 합작조건, 지분비율, 수익분배비율 또는 상품의 분배, 외국투자자 사전 투자금회수, 손익의 분담, 경영관리 방식 및 합자기업 종료 시 재산의 귀속문제 등 사항 계약 약정에 의해 결정

- 합자기업과 대비 상대적으로 기업의 설립, 조직기구와 경영관리, 해산과 청산 등의 모든 분야에서 법률적인 규율을 적게 받아 당사자 융통성이 높은 기업형태

- 법인격 취득여부 출자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 가능

- 법인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쌍방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합관리기구에 의해 경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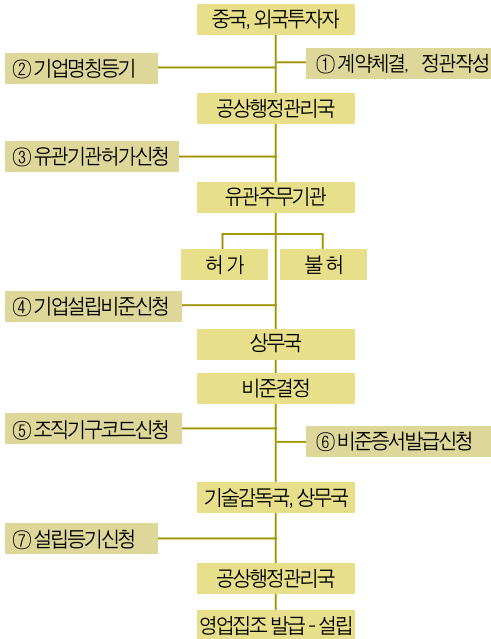
- 일방 당사자에 위탁관리 가능

- 출자자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출자자의 책임 형식을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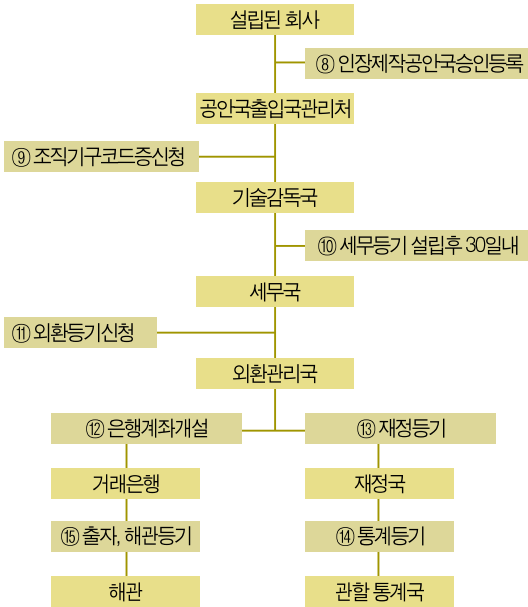
II.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관련 제도

1. 설립절차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수속》



① 계약체결, 정관작성(계약체결은 합자, 합작에 한함)

중국업체와 공동으로 합자나 합작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경우 일반적으로 파트너 선정을 거쳐 초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면 의향서를 체결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회사경영 등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협의서를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향서나 협의서 체결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계약체결을 하기도 한다.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자의 권리의무, 회사경영 등 사항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고 있어 합작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그러나 합작회사의 경우 출자자의 권리의무, 회사경영, 합작조건, 지분비율, 수익분배비율, 수익분배방식, 투자금 사전회수문제, 청산 후 잔여재산 처리 등이 합작계약의 약정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고도의 협상력을 필요로 한다.

② 기업명칭등기(즉시 처리)

주무기관: 공상행정관리국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무부에 심사비준을 받기 전에 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명칭 등기를 해야 한다. 이는 정부당국에서 규정한 대로 기업명칭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기존 기업명칭과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기업명칭 사용불가 문자

- 국가,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주는 것
- 대중을 기만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융기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외국국가나 지역의 명칭, 국제조직 명칭
- 정당명칭, 당정군기관명칭, 군중조직명칭, 사회단체 및 군부대 일련번호
- 중국어병음자모(단, 외국어명칭중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 숫자
-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것

③ 유관기관허가

외국투자자가 일부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

문화콘텐츠 관련 사전허가 업종

업종	허가기관
인터넷문화콘텐츠업	문화부
음반유통업	문화부
공연매니지먼트업, 공연장운영업	문화부
방송프로그램제작	광전총국
도서, 잡지, 신문 유통판매업	신문출판총서
부가가치통신업	신식산업부

④ 기업설립비준(5~7일 소요)

주무기관: 상무국

외국인 투자기업설립에 대한 비준이 곧 계약, 정관 및 동사회 구성원에 대한 비준이기도 하다. 투자자는 계약(합자, 합작기업), 정관 및 동사회 구성원에 대한 상무국 비준 신청시 프로젝트건의 및 가행성(가능성)연구보고를 함께 제출한다. 상무국은 프로젝트건의 및 가행성(가능성)연구보고를 발전과 개혁위원회에 보내 당해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약, 정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비준 시 비준결정서(批復)를 발급한다.

☞ 지역 또는 회사형태(합자, 합작)에 따라서는 프로젝트건의 및 가행성(가능성)연구보고를 별도로 기업명칭등기 전 또는 상무국 비준신청 전에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비준을 취득하여야 한다.

⑤ 조직기구코드 신청(즉시 처리)

주무기관: 기술감독국

중국 정부는 전국의 기관, 기업 등 사업주체를 전산관리하기 위해 1998년 1월 1일부터 조직기구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상무국의 비준결정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기술 감독국에 조직기구코드 등록을 신청한 다음, 조직기구코드를 부여 받는다.

⑥ 비준증서발급(2~3일 소요)

주무기관: 상무국

북경의 경우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각 구/현 상무국에서 비준결정을 하고, 북경시 상무국에서 각 구/현의 비준결정을 근거로 비준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⑦ 설립등기(5일 소요)

주무기관: 공상행정관리국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설립에 대한 기준을 취득하고 관할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 회사설립등기를 한 후 영업집조를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집조 발급일(북경의 경우 회사설립 등기신청일)이 회사의 성립일이 된다.

회사설립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은 정식으로 설립이 되게 된다. 그러나 자본 출자 및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무, 외환, 재정 등 각 유관기관의 등기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설립 등기수수료

- 등록자본금 1천만 위엔 이하: 등록자본금의 천분의0.8%
 - 등록자본금 1천만 위엔 초과: 초과되는 부분 천분의 0.4%
- [계산공식] 8,000 위엔+(등록자본금-1천만 위엔)×0.4%

⑧ 인장제작에 대한 공안국 승인 및 등록

주무기관: 북경시 출입국관리처

외국인투자기업은 회사설립등기가 경료된 후 기타 정부 관련부서 수속과

회사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장제작을 해야 한다. 북경시 출입국관리처에서 인장제작에 대한 승인을 받고 공안국이 지정한 인장제작업체에서 필요한 인장을 제작한 후 공안국에 인장을 등록한다.

⑨ 조직기구코드증 수령

주무기관: 기술감독국

영업집조를 받은 후 인장이 제작되면 기술감독국으로부터 조직기구코드증을 취득해야 한다.

⑩ 세무등기(당일 또는 1~2일 소요)

주무기관: 지방세무국

외국인투자기업은 개업 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한 후 30일 이내에 회사소재지의 관할 세무국에 세무등기를 하여야 한다.

중전에는 국세, 지방세를 개별적으로 등기하였던 것을 최근에는 지방세무국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있어 중전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

⑪ 외환 등기(5~10일 소요)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외환관리국에서 외환등기수속과 동시에 외환자본금계좌 개설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⑫ 은행계좌개설(즉시 처리)

외국인투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외환자본금계좌와 인민폐기본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인민폐기본계좌개설 신청은 세무등기 후 언제든지 가능하나, 인민폐기본계좌개설에 대한 인민은행의 허가(계좌개설은행에서 처리)는 약 5~10일 정도 소요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환관리국이 발행하는 외환등기증 및 외환계좌개설 신청보고서에 근거하여 외환자본항목계좌를 개설한다. 외환계좌는 경상거래에 관련된 계좌와 자본거래에 관련된 계좌로 엄격히 구분되어 운영되는데 우선 외환자본항목계좌를 개설하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 외환경상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면 된다.

계좌개설이 완료되면 계좌개설은행은 개설된 계좌의 계좌번호, 화폐종류와 개설일자 등을 <외환등기증>에 기재한다.

⑬ 재정등기(즉시 처리)

주무기관: 재정국

외국인투자기업은 재무회계제도를 수립하고 회사소재지의 재정국에 재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회계제도

-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소득세 납부 후의 이윤 중에서 준비기금과 후생복지기금 공제
- 준비기금의 공제비율은 납세 후 이윤의 10% 이상
- 공제액의 누계액이 등록자본의 50%에 이르면 공제 안 함
- 종업원상여금과 후생복지기금의 공제비율은 회사 임의 결정
- 전 회계연도의 결산을 보전하기 전에는 이윤분배를 하지 못함
- 전 회계연도에 분배하지 않은 이윤은 본 회계연도의 이윤과 함께 분배 가능
- 회계증빙자료, 회계장부, 재무제표는 중문 작성(외국어 작성시 중문번역본 첨부)
- 독립채산제로 운영
- 연간재무제표와 청산재무제표는 중국 재정·세무기관의 규정에 의거 작성

⑭ 통계등기(즉시 처리)

주무기관: 통계국

통계 등기 시에는 관할 지방정부 통계국에 비치되어있는 기업통계등기표를 작성하고 비준증서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 투자에 대한 비준취득 여부를 확인 받으면 된다.

⑮ 해관등기(3~5일 소요)

주무기관: 소재지 관할 해관

수출입 업무가 있는 회사의 경우 회사설립 절차가 완료되고 자본금계좌가 개설되고 나서, 1차 자본금 출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해관등기를 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

① 계약체결, 정관작성

해당사항 없음

② 기업명칭등기

구비서류

- 명칭예비 심사비준신청서
- 투자자의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개인투자자 경우 여권
- 지정 위임장: 수권대표 또는 법인대표 서명

③ 유관기관 허가

기관별, 허가사항별 각기 상이하므로 관련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계약, 정관 및 동사회 구성원에 대한 심사비준

구비서류

- 설립신청서
- 기업명칭 예비심사비준통지서
- 회사설립의 타당성 연구보고
- 합자 또는 합작계약서(합자, 합작의 경우에 한함)
- 회사정관
- 건물임대차계약서 및 건물소유권등기증(없는 경우 건물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대체서류)
- 주소증명(소정양식)
- 투자자의 신분증명
- * 중국:영업집조, 한국:사업자등록증과/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공증 후 외교통상부 및 주한중국대사관 인증)
- 투자자의 자산신용증명(예금잔고증명으로 대체 가능)
- 투자자의 제1기 동사회구성원 임명파견서
- 설립하는 현지법인의 법정대표인 등기표
- 동사회 구성원, 경리 상황표

⑤ 조직기구코드신청

구비서류

- 기업명칭 예비심사비준통지서
- 정관 및 동사회 조직구성원에 관한 비준결정서 원본

⑥ 비준증서

구비서류

- 계약, 정관 및 동사회구성원에 관한 비준결정서 원본
- 조직기구코드 부여서류(원본)
- 기업기본 상황

⑦ 설립등기

구비서류

- 기업명칭 예비심사비준통지서
- 정관 및 동사회구성원에 관한 비준결정서 원본
- 비준증서 부분 1부
- 투자자의 자산신용증명 혹은 은행잔고증명
- 외상투자기업설립 등기신청서 및 회사법정대표인 등기표
- 동사회구성원, 경영책임자 상황표
- 주소증명
- 회사정관
- 타당성연구보고

⑧ 인장제작 공안국승인 및 등록

구비서류

- 영업집조 원본
- 비준증서 원본
- 사무직원신분증 혹은 여권사본

⑨ 조직기구코드증 수령

구비서류

- 조직기구코드부여서류
- 비준증서 사본
- 영업집조 부분 사본
- 비준증서와 영업집조 부분의 원본 제시
- 법정대표의 신분증 사본
- 관련 표 작성 후 인감 날인

⑩ 세무등기

구비서류

- 영업집조
- 정관
- 은행계좌허가증(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세무등기 가능. 단 세무등기를 마친 후 반드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세무국에 추가등록을 해야 함)
- 법정대표 여권사본
- 인감, 재무전용인장
- 부동산증서 혹은 임대차계약서
- 조직기구코드증

⑪ 외환 등기

구비서류

- 신청서
- 회사정관 및 비준결정서 사본
- 비준증서 사본
- 영업집조 사본
- 조직기구코드증 사본
- 영업집조 부분, 비준증서, 비준결정서, 조직기구코드증, 정관 원본 제시
- 계좌개설은행 명칭
- 법정대표 여권 사본

⑫ 은행계좌개설

구비서류

- 외환등기증 원본 및 사본
- 외환관리국 비준서류
- 영업집조 정부분, 비준증서, 비준결정서의 원본 및 사본
- 조직기구코드증 원본 및 사본(및 IC카드)
- 국세, 지방세등기 원본 및 사본
- 법정대표 여권사본
- 회사정관, 건물임대차계약서, 재산권증명 사본

⑬ 재정등기

구비서류

- 비준증서
- 영업집조부분
- 정관

- 정관 및 동사회 구성에 관한 비준결정서
- 조직기구코드증
- 국세, 지방세세무 등기증
- 은행계좌개설 허가증, 외환등기증
- 모든 사본은 인감 날인 필요
- 인터넷 상으로 심사 후 표 양식 다운로드

⑭ 통계등기

구비서류

- 영업집조, 비준증서원본 및 사본
- 조직기구코드증 원본 및 사본(및 IC카드)
- 법인단위기본상황표(수령)

⑮ 해관등기

구비서류

- 회사정관 및 비준결정서 원본, 사본
- 비준증서 원본, 사본
- 영업집조 원본, 사본
- 코드증서 원본, 사본
- 세무등기증 원본, 사본
- 재무제도
- 재무구성인원
- 회계과목의 설치
- 자산 신용 검증 보고

- 자금출자확인서
- 회사인장

3. 설립비용

내용	비고
건물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실제 지급비용
건물임대차계약에 따른 인화세	임대금액(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모두 합산된 임대금액)의 천분의 1
지방세, 국세 세무등기	인민폐 10위엔
조직기구코드등록	인민폐 30위엔
설립등기	등록자본금의 천분의 0.8%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천만위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천분의 0.4%)
인장제작	약 인민폐 500~1,000위엔
해관등기	인민폐 50위엔

4. 출자금 납입 관련 절차

- ① 외환송금을 위해선 중국현지에서 우선 회사설립
- ② 회사 명의의 외환자본금계좌 개설
- ③ 한국의 외국환은행 본/지점(주거래은행 또는 주채권은행)에서 해외투자신고를 하고 출자금 송금

한국에서 해외투자신고수리 및 송금 시 구비서류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붙임 서식)
- 사업계획서(단,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하의 경우 투자개요서)(붙임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완납증명서
- * 개인: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소득세납세사실증명서
- 합자, 합작인 경우 합자, 합작 계약서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붙임 서식)
- 비준증서, 영업집조, 외환자본금계좌개설 증빙서류 등의 사본
- 신분증 및 도장

④ 기계설비 등의 현물출자가 있을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화물 발송

⑤ 투자자의 출자금이 납입되면 회사는 회계사무소에 의뢰해 출자확인서 (驗資報告)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영업집조를 갱신하고 투자자에게 출자증명서 발급

출자증명서 기재사항

- 기업명칭, 기업성립일,
- 출자자 명칭/성명 및 출자액, 출자일자
- 출자증명서 발급일자,

Ⅲ. 외국인투자기업 형태별 장단점

형태	장 점	단 점
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자적인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자적인 정책결정 의사결정 신속 파트너와의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 경감 투자금 사전 회수 불가 경영노하우, 생산기술 등 비밀 유지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에 대한 리스크 집중 시장개척 장기간 소요 대 공공기관업무 자체 처리 일부 산업진출 불가
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에 대한 리스크 분산 시장개척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의 기존 거래처 활용 가능 상대적으로 중국소비자 친화적임 자금부담 경감 일부 투자제한산업 진출 가능 투자금 사전회수 불가 대 공공기관업무 중국파트너 협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결정 애로 파트너와의 분쟁발생 가능성 존재 경영노하우, 생산기술 등 비밀 유출 용이 파트너에게 기술이 이전되어 사후 경쟁자로 부상
합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 분산 시장개척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의 기존 거래처 활용 가능 상대적으로 중국소비자 친화적임 자금부담 경감 일부 투자제한산업 진출 가능 투자방식, 이윤분배, 경영권 등에 대한 융통성 발휘 가능 대 공공기관업무 중국파트너 협조 처리 투자금 사전 회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결정 애로 파트너와의 분쟁발생 가능성 존재 경영노하우, 생산기술 등 비밀 유출 용이 파트너에게 기술이 이전되어 사후 경쟁자로 부상

Ⅳ. 설립 시 유의사항

장소선정

임차하는 건물(사무실) 또는 토지(공장부지)가 회사설립이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주거용 건물이거나 농작지의 경우 회사설립 비준 거부

설립비용 및 임시계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회사설립이 된 다음 출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설립과정에 지출된 비용을 출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회사설립 시까지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 후 불필요하게 자본금을 출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약 회사설립과정에 지출된 비용을 출자금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임시계좌개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임시계좌개설 구비서류

- 공증 및 주한중국대사관 인증의 위임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감 날인 요)
- 법인인감
- 대리인의 여권 사본
- 사무실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자금소요근거서류) 원본 및 사본

계약서 및 정관 비준 확인

합자회사의 계약서와 정관은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비로소 발효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과 정관의 약정내용이 그대로 비준기관에 제출되도록 반드시 간인을 하고, 사후 보충계약 또는 계약이나 정관변경을 하게 될 경우 비준기관의 비준사실과 비준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기업을 설립할 때 계약서와 정관 시 필수 기재사항으로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을 필히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 개념의 혼란이 생

기는 경우가 있다.

등록자본은 기업이 중국의 등기관리기관에 등기하는 자본금으로서 실제로 투자자가 납입하여야 할 출자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자본금이다.

중국에서 말하는 투자총액은 등록자본에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유동자금이 더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후 운영자금을 중국현지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라면 투자총액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책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투자총액 대비 등록자본 비율〉

단위: 만불

투자총액	등록자본	
	비율	최저금액
300 이하	7/10	
300초과 1000이하	1/2	210
1000초과 3000이하	2/5	500
3000 이상	1/3	1200

경영권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중국 국내기업 및 외자기업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중국에서는 股東會라 함)와 동사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사원총회가 회사의 최고의 결기관의 직능을 가지며 출자자들이 회사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권을 가지나 외국인투자기업 중 합자나 합작회사의 경우 투자자가 선임하는 동사로 구성된 동사회만이 존재하여 사원총회와 동사회의 직능을 동시에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합자, 합작회사의 경우 사원총회가 없고, 동사회 동사는 1인당 1개의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동사인수에 따라 경영권이 나누게 된다. 그러므로 합자회사와 합작회사에 있어서 지분은 이익분배와 관련이 밀접할 뿐 경영권에는 큰 영

향이 없다. 경영권의 확보를 위해서 1%의 지분을 놓고 다투는 사례가 있으나 이보다 경영권 확보의 목적이 우선이라면 다소 지분에서 양보를 하더라도 동사인수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 동사인수에서 다수 확보가 가능하다면 동사회 의결조건을 과반수로 하고 소수의 지위에 놓일 경우 동사회 의결조건을 강화하여 경영권 확보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경영권 확보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정관수정, 해산과 청산, 증자와 감자, 지분양도, 기업분리와 합병 등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결의 사항으로 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동사회 출석한 동사 중 한 명이라도 반대의견을 표시하면 결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원래 당사자 일방이 우세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 규정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투자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관계가 악화될 경우 회사 경영이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

V. 외국인투자기업관련 증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외상투자기업 영업집조 정보



- ▲ 외상투자기업 조직기구코드증
- ◀ 외상투자기업 외환등기증
- ▼ 외상투자기업 세무등기증



제3절 라이선스 계약

1. 계약체결 전 체크 포인트

1. 음악

음악관련 라이선스 계약 시에는 음악의 특성에 따라 저작권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음악저작권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협회)와 저작인접권자(가수, 연주자 등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국 진출 시 이익관계의 분배에 대해 이 모든 사람과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출판

출판의 경우, 한국의 출판물을 중국에서 출판하기 위해서는 중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해야 하고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간혹 출판계약을 하면서 출판사가 해외출판권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판사는 번역 제작을 허락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출판물에 사용된 삽화 등에 대해서도 저자 외에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익의 분배문제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영상

영상산업의 경우 중국의 저작권법과 출판 방송 또는 영화 관련 법률규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저작권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한국과 크게 차이를 가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중국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에 반해 중국이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중국은 아직도 콘텐츠 사업에 대해 심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상사업의 경

우 상영 또는 방영할 수 없는 내용과 영상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업자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런 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4. 인터넷콘텐츠

인터넷문화업체와 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예술저작물 등 인터넷 문화콘텐츠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국측 인터넷문화사업업체는 문화부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5. 모바일콘텐츠

모바일콘텐츠의 경우 모바일통신사업자와 ISP사업자, ICP사업자, 콘텐츠제작자 등이 관련되는 다층적 사업구조특성상 과금체계와 수익분배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로열티를 수취할 것인지, 수익에 대해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로열티 지불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해 상세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II. 중국파트너의 자격 요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중국에 진출할 때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중국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다. 중국법률은 출판, 음악, 영상, 게임의 경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기업만이 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파트너가 영업에 필요한 허가증을 모두 취득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를 계약서상에 상대방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 각 산업별 중국파트너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산업별	구비사항
출판산업	- 국가가 지정한 수입업체
음반산업	- 국가가 지정한 수입업체 - 음반발행 허가취득
영상산업	- 라이선스 계약의 목적물에 따라 영상물을 상영, 방영할 수 있는 비준증서 취득 - DVD, VCD, CD 등의 제품으로 출판 할 경우 출판허가증 취득
게임산업	- 인터넷접속 부가통신업무 허가증, 전신 및 정보 서비스업무 경영허가증, 인터넷 문화 경영증, 전자출판물의 출판 경영 허가증 취득
캐릭터산업	- 출판, 음반, 완구, 모바일 등 여러 산업과 연관되어 각각의 산업에 맞는 허가증 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집조 취득

III. 계약 시 유의사항

1. 일반적 유의사항

(1) 구두 계약에 의존하지마라.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두약속은 약정이 없는 것과 같다. 중국 및 일부 국가에서는 구두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2) 주무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계약과 외국의 계약은 다른 점이 많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중국의 많은 계약이 중국 주무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취득을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하여 주무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으면 계약이 원천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으

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계약서는 매 쪽마다 서명 또는 간인을 한다.

계약서의 매 쪽마다 서명 또는 간인을 하여 계약서의 일부를 몰래 바꿔치기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특히 정부기관의 인허가 취득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중국측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 계약서 내용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인을 해야 한다.

(4) 보증인은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한다.

보증인이 서명한 계약서라 하더라도 보증자가 재산이 없는 사람이면 손실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 확실한 배상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동시에 담보 계약을 체결해두어야 한다.

(5) 담보는 반드시 등기한다.

담보물은 반드시 주무기관에 등기를 해야만 한다. 등기하지 않은 담보는 무효이다.

(6) 중국은 한국이 아닌 외국임을 명심한다.

중국은 한국과 다른 외국이다. 당연히 법률 또한 다른 것이 많다. 그러나 실제 중국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중국을 한국처럼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생각이 중국에서 계약체결에 실패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계약체결 전 철저한 사전조사와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다.

(7)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중국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고문을 삼사(三士)라고 한다. 이 삼사가 중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디가드라고 말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

하기 전에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후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들 삼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실 예방이 사후 수습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계약의 경우에도 법률전문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계약에 성공, 계약 후의 일 처리, 계약 불이행 시 구제 등의 문제를 처리하기에 편리하다.

(8) 공증(公證).

모든 계약이 다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을 공증하는 경우라면 입회인 서명을 받아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계약체결당사자 및 서명인, 계약의 내용, 절차, 요식 행위상 하자가 없고 당해 계약이 합법적이어서 효력 발생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계약체결을 하면서 그 계약행위에 대해 법률로써 금지를 하거나 규제를 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거나 내용 또는 절차, 요식행위상 하자가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의 일부 내용이 무효로 된다.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계약을 체결한 후 공증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내용상 유의사항

(1) 독점라이센스 허락 여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측 당사자에게 독점사용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통상사용권을 줄 것인지 심사숙고를 한 후 결정하고 이를 계약서상에 명확히 해야 한다. 진행하다 보면 많은 중국 파트너가 독점사용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라이선서 입장에서 볼 때 독점사용권의 부여는 중국을 각성(省)별 또는 몇 개의 섹터로 나눠 지역적인 독점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중국 전역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부여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중국 사업은 중국측 라이선서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게임의 경우처럼 법률로써 독점사용권 부여를 강제하는 등 부득이 하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할 경우 기간별 실적에 대한 목표량을 정하고 실적미달 시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약에 약정하는 것이 좋다.

(2) 허락하는 권리의 범위

라이선스 계약의 사용가능한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진출하는 아이টে에 따라 한가지 분야에만 관련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화콘텐츠라는 특성상 여러 가지 형태/분야에 걸쳐 사용될 수 있는 아이টে의 경우 계약의 단계에서 미리 사용 가능한 범위를 예시하는 것이 좋다.

(3) 허락하는 지역의 범위

사용권이 중국 전역에 대한 독점사용권이 아닌 경우 라이선스 계약의 지역적 범위를 계약서상에 명확히 약정할 필요가 있다. 독점사용권이라 해도 대만, 홍콩, 마카오는 계약지역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도서출판계약의 경우와 같이 화교가 많은 동남아 등에 대한 진출을 고려하여 수출금지 조항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아이টে의 경우도 이들 사업자가 전국서비스업자와 지역서비스업자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지역적 제한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4) 분쟁해결

라이선스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분쟁해결조항은 매우 중요하다. 소송과 중재 중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 어느 기관을 관할로 할 것인가 이 모두 당사자의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중국의 현행 사법제도 현실을 감안할 때 법원이나 법관이 지방정부에 예속되어 있어 공정성 보장에 있어 다소 신뢰가 떨어지고 절차의 번잡 및 시간지연(섭외사건인 경우 심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고비용 등의 단점이 있는 반면 중재의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자질이 좋은 중재위원을 선정할 수 있어 공정

성 보장에 유리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중재계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측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에 따라 중국에 있는 중재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투자자에 불리한 것으로서 형평성이 결여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형평성이나 비용,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 소재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중국에는 중재기관이 각 지역별로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재기관을 정하고 당해 중재기관의 명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관할 중재기관이 불명확하거나 중재와 소송을 병기할 경우에는 중재계약이 무효가 되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